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 법안의 동향과 시사점

2022. 8. 24.

김 세 준

(경기대학교 교수)

목 차

I. 들어가며

II. 국내의 동향

- P2B 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 P2C 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III. 외국의 동향

- 유럽연합
- 일본

IV. 시사점

I. 들어가며

- 국내 법안에 관한 동향으로서 최근 발의된 두 가지 측면의 입법안 소개
 - P2B :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투명성 관련
 - P2C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 국외의 동향은 유럽연합과 일본의 입법안이 주목됨 : 플랫폼에 관한 가장 최근의 입법례로서 검토의 의미가 큼
 - EU : 디지털서비스 패키지(DSA, DMA)
 - 일본 :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향상에 관한 법률」,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

II. 국내의 동향 1. P2B 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방통위안)

1) 주요 내용

- 입법목적 : 플랫폼의 거래질서 확립 / 이용자의 권익 보호
- 규율대상 : P2B + P2C
- 공통 의무
 - 13개 항목의 계약내용을 개별·구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을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
 - 서비스 제한(ex. 계약 해지) 등 사전통지의무
 - 판매·정산 관련 정보제공의무
 - 부당한 정보 이용 금지 등

II. 국내의 동향 1. P2B 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방통위안)

1) 주요 내용 (계속)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에 매출액, 거래금액, 이용자수, 이용집중도, 거래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노출 기준의 공개
- 서비스 제공 거부사유 등 통지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 11가지 규정

- P2C 관계에서의 의무

- 서비스별 이용약관의 신고 및 보완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 10가지 규정
- 이용자의 데이터의 전송요구권
- 플랫폼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약관의 명시 의무

II. 국내의 동향 1. P2B 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방통위안)

2) 검토

- P2B와 P2C 관계를 함께 규율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의 규율대상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
- 다만 규제내용이 포괄적·추상적
- 시행령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규정하는 조항도 다수 존재
 - ex. 플랫폼의 연대배상책임에 관한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제15조 제2항 등

II. 국내의 동향 1. P2B 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위안)

1) 주요 내용

- 입법목적 : 공정한 플랫폼 중개질서 확립,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지위의 대등성 확립
- 적용범위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 역외적용 : 해외 플랫폼운영자도 국내 이용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
 - 규모요건 : 총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또는 총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II. 국내의 동향 1. P2B 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위안)

1) 주요 내용 (계속)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의무
 -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 중개거래계약 해지·변경 등에 대한 사전통지의무
 - 서류보관의무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부당한 구입강제, 이익제공의 강요, 손해의 전가, 불이익 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간섭행위
 - 보복조치의 금지
 - 협약체결의 권장
 - 손해배상책임

II. 국내의 동향 1. P2B 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위안)

2) 검토

-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의미
- 다만 특별법으로서의 구체적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
- 특히 플랫폼의 의무규정 중 의미가 불분명하고 실제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러운 경우 존재
 - ex. 거래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거래과정상 발생한 손해의 분담 기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플랫폼의 영업모델에 부합하는지 등

II. 국내의 동향 2. P2C 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안)의 주요 내용

-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 구분
 - 중개 / 연결수단제공 / 전자게시판서비스 / 부수적 서비스
- 중개 플랫폼 및 연결수단 제공 플랫폼의 주요 의무규정
 - 투명성 확보의 조치의무 : 검색결과의 순위 결정 기준 표시
 - 맞춤형 광고 제공사실의 사전 고지 의무
 - 플랫폼에 관한 정보게시의무
 -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및 연대배상책임
 - 분쟁해결의무
 - 위해방지조치의무

II. 국내의 동향 2. P2C 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안)의 주요 내용

- 중개 플랫폼의 주요 의무규정
 - 계약당사자의 고지의무 및 연대배상책임
 -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야기에 대한 연대배상책임
 - 업무내용 고지의무 및 그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
 -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보충적) 이행책임

II. 국내의 동향 2. P2C 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2) 검토

-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새로운 개념을 규정한 것에 의미
- 기존 공정위안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일부 보완
- 다만, 온라인 플랫폼 정의 규정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제기 존재
- 또한 플랫폼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 존재

III. 외국의 동향 1. 유럽연합

(1) EU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Digital Services Package)

-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안(DSA) 및 디지털시장법안(DMA)를 규칙(Regulation)으로 제안
 - 이는 유럽연합 내에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통일된 행위 규칙을 부과함으로써 플랫폼 경제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유럽연합 의회는 2022년 3월 24일 DMA에 대하여, 그리고 2022년 4월 23일에 DSA에 대하여 정치적 합의(political agreement)에 도달
- 유럽연합 의회는 2022년 7월 5일 제1독회(the first reading)에서 DSA와 DMA를 채택(adoption)
 - 이후 양 법안은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서명 후 DSA와 DMA는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고 그로부터 20일 후에 발효 (올해 가을로 예상)
 - 채택되면 유럽연합 전 지역에 직접 효력을 가지며, 발효 후 15개월 또는 2024년 1월 1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시행
 - 다만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에 대해서는 더 일찍, 즉 그 지정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

III. 외국의 동향 1. 유럽연합

(2) DSA의 기본 취지 및 특징

-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개 서비스(intermediary service) 제공자로 하여금 책임감 있고 성실한 행위를 하도록 촉진하여 유럽연합 시민과 그 밖의 당사자가 기본권, 특히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DSA는 그 규칙을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엄격히 제한
 - 비례의 원칙 : 서비스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대칭적인 상당주의의무(due diligence obligations)를 설정
 - 따라서 DSA는 모든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의무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특히 온라인 플랫폼 및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각각 적용되는 추가적인 의무를 별도로 규정
 - 또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유럽연합 수준의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회원국 전체의 협력 메커니즘을 도입

III. 외국의 동향 1. 유럽연합

(3) DSA에서 플랫폼의 규모별 유형 구분

-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정 미적용

- ※ 소기업(small enterprise) : 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액 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합계액이 1천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 ※ 소상공인(microenterprise) : 10명 미만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액 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합계액이 2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 온라인 플랫폼

-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아닌 경우, DSA에서 규정하는 상당주의의무 모두 적용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 해당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EU내 월평균 활동이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인 경우(이 조건은 향후 유럽연합 전체 인구의 10% 이내에서 조정 가능) 추가적 의무규정 적용

III. 외국의 동향 1. 유럽연합

(4) DSA의 주요 내용 : 각 플랫폼의 의무

- 중개 서비스 제공자
 - 연락창구(Points of contact) 구축의무 (제10조)
 - 법률 대리인(Legal representatives)의 지정의무 (제11조)
 - 약관에 관한 의무 (제12조)
 - 투명성 보고의무(Transparency reporting obligations) (제13조)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 통지 및 조치 메커니즘(Notice and action mechanisms)을 구축할 의무 (제14조)
 - 이유설명(Statement of reasons) 의무 (제15조)

III. 외국의 동향 1. 유럽연합

(4) DSA의 주요 내용 : 각 플랫폼의 의무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 내부 불만처리 시스템 구축 의무 (제17조) /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의무 (제18조)
 -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trusted flaggers)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의무 (제19조)
 - 부정이용행위에 대한 조치 의무 (제20조) / 범죄 의심 정보 신고의무 (제21조) / 판매자의 신원확인 의무 (제22조)
 - 투명성 보고의무에 추가된 의무 (제23조) / 온라인 광고에 대한 투명성 의무 (제24조)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 의무 (제26조, 제27조)
 - 독립감사 의무 (제28조) / 추천시스템 관련 약관상 의무 (제29조)
 -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 의무에 대한 추가적 의무 (제30조)
 - 데이터 접근 권한 제공의무 (제31조) / 모니터링 책임자 지정의무 (제32조)
 - 투명성 보고의무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 (제33조)

III. 외국의 동향 1. 유럽연합

(5) 검토

1) 유럽 내에서의 자체 평가

-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 “DSA는 유럽연합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기본 규칙을 업그레이드한다. 이는 온라인 환경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며, 이로써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비즈니스의 기회를 보호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실질적인 효과를 준다. 그리고 규모가 클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도 커진다. 2022년 3월 정치적 합의를 도출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보완하는 오늘의 합의는 모든 유럽인, 모든 EU 기업 및 국제적 거래상대방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2022년 7월 5일 자 보도자료
 - “디지털서비스 패키지는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의존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규칙을 제시한다. 이 새로운 규칙은 EU 전체에 적용되며, 기본권에 기반을 둔 보다 안전하고 개방된 디지털 공간을 만들 것이다.”

III. 외국의 동향 1. 유럽연합

(5) 검토

2) 일부의 비판

- 플랫폼 사이에 규모에 따른 규제격차를 만들어 냄으로써 이와 같은 규제시스템이 플랫폼 성장의 장벽이 될 위험 존재
- 즉, 플랫폼의 사업확장, 특히 초대형 플랫폼으로서의 승인이 곧 다른 규제환경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면 그러한 후기단계에 대한 투자가 대폭 축소될 위험

III. 외국의 동향 2. 일본

(1)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향상에 관한 법률」

1) 개요

- 2020년 2월 제정,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

- 입법목적(제1조)

- “이 법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기술혁신의 진전에 의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어 세계적 규모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가 생김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플랫폼 제공자의 자주성 및 자율성을 배려하면서, 상품 등 제공 이용자 등의 이익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특정 디지털플랫폼 제공자의 지정, 특정 디지털플랫폼 제공자에 의한 제공 조건 등의 개시,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평가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특정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I. 외국의 동향 2. 일본

(1)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향상에 관한 법률」

1) 개요 (계속)

- 규율대상

- 특히 거래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높은 플랫폼을 “특정디지털플랫폼”으로 지정

- 이때 다음을 기준으로 함 :

- ① 대상이 되는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로의 영향의 크기
- ② 해당 분야의 일부 디지털플랫폼으로의 이용의 집중 정도
- ③ 거래의 실정 및 동향을 감안한 이용사업자의 보호 필요성
- ④ 다른 규제나 시책에서의 대응 상황
- ⑤ 해당 분야 내에 있어 일정한 규모(매출액, 이용자 수 등)

III. 외국의 동향 2. 일본

(1)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향상에 관한 법률」

2) 주요 내용 및 의의

- 종래 사후규제로 달성할 수 없었던 효과를 보완하고자 사전규제를 중심으로 마련됨
 - 특정 디지털플랫폼 제공자의 거래조건 등 정보의 개시, 자주적인 절차·체제의 정비, 운영 상황의 보고 및 경제산업성의 평가 요구 등
 -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의의와 역할을 고려함에 따라, ① 온라인 플랫폼의 자주적 대응을 기본으로 하는 것, ② 국가의 관여나 규제를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 ③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④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상호이해 촉진을 도모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동법 제3조)

III. 외국의 동향 2. 일본

(2)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거래DPF법’)

1) 개요

-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특화된 신규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
- 2021년 5월 제정,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 입법목적(제1조)
 - “이 법은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에 따라 거래 디지털플랫폼이 국민의 소비생활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거래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 의한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는 자발적인 대처 촉진, 내각 총리 대신에 의한 거래 디지털플랫폼의 이용 정지 등에 관한 요청 및 소비자에 의한 판매자 등 정보의 개시의 청구에 관련된 조치 및 관민 협의회의 설치에 대해서 정함으로써 거래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통신 판매에 관한 거래의 적정화 및 분쟁해결의 촉진에 관하여 거래 디지털플랫폼 제공자의 협력을 확보하고, 거래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규율대상 : P2C 관계

III. 외국의 동향 2. 일본

(2)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거래DPF법’)

2) 주요 내용

- 플랫폼 제공자가 강구할 조치에 관한 노력의무
 - 소비자가 입점업체와 원활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 표시에 관한 불만과 관련된 사정의 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
 - 입점업체의 특성에 이바지하는 정보의 제공
- 플랫폼 제공자가 강구한 조치의 개요 등의 공개
-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이용정지 등의 요청
 - 재화 등 중요사항의 표시에 현저한 허위·오인 표시가 있다고 인정 + 당해 표시의 시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
- 입점업체 신원정보의 공개청구

III. 외국의 동향 2. 일본

(2)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거래DPF법’)

3) 특징

- 거래DPF법의 기본적 사고
 - 디지털 기술의 활용 등에 의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법은 과거에 비하여 일취월장하고 있으며 최전선에서 대응하는 플랫폼 사업체에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축적되고 있으므로, 플랫폼 사업체에 의한 유연한 대응의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 거래DPF법은 플랫폼 제공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로서 노력의무를 큰 범위로서 설정하고, 그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플랫폼 제공자에게 위임하며, 그러한 조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함
- 「플랫폼 제공자가 강구할 조치에 관한 지침」
 - “법의 시행 상황 및 플랫폼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동적이고 유연하게 재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탄력적 적용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 제공자가 “주체적이고 계속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 사업 운영 실태에 따라 적절하고 유효한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전제로 함

IV. 시사점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내의 입법안들은 플랫폼 규율에 관한 정부 기조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에 있음
- 외국의 경우,
유럽은 대규모 플랫폼으로부터 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른 입법이라는 점을 주목
일본의 최근 입법 역시 자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진흥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의 자주적인 규율에 관한 태도를 통해 확인 가능
- 향후 온라인 플랫폼에 관하여 규율함에 있어서는 공정성, 투명성, 소비자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가치를 추구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기술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함